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상담·교육〉

■ 강득구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3604호)

2024. 1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연 광 석

목 차

I . 개요	1
II . 검토의견	2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상담·교육	2

I. 개요

1.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3604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강득구의원 등 11인

(2) 제 안 일 : 2024. 9. 3.

(3) 회 부 일 : 2024. 9. 4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
한편,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,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·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,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17조제5항 신설).

Ⅱ. 검토의견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상담·교육

- 개정안은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의 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고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는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이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통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5항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 예방 상담·교육은 개별 면담, 강 의,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 이 경우 「초 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 교의 장은 자살예방 상담·교육 을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」 제1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 진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 다.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	⑥ ----- ----- -----제5항-----

다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자살예방 상담·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·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, 방법 및 내용,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⑦ -----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

□ 개정안은 청소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2조에 따른 학교¹⁾에서 시행되는 자살예방 상담·교육²⁾이 외연을 확장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³⁾과 통합하여 실시될 수 있는 근거 규

1)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2)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3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·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·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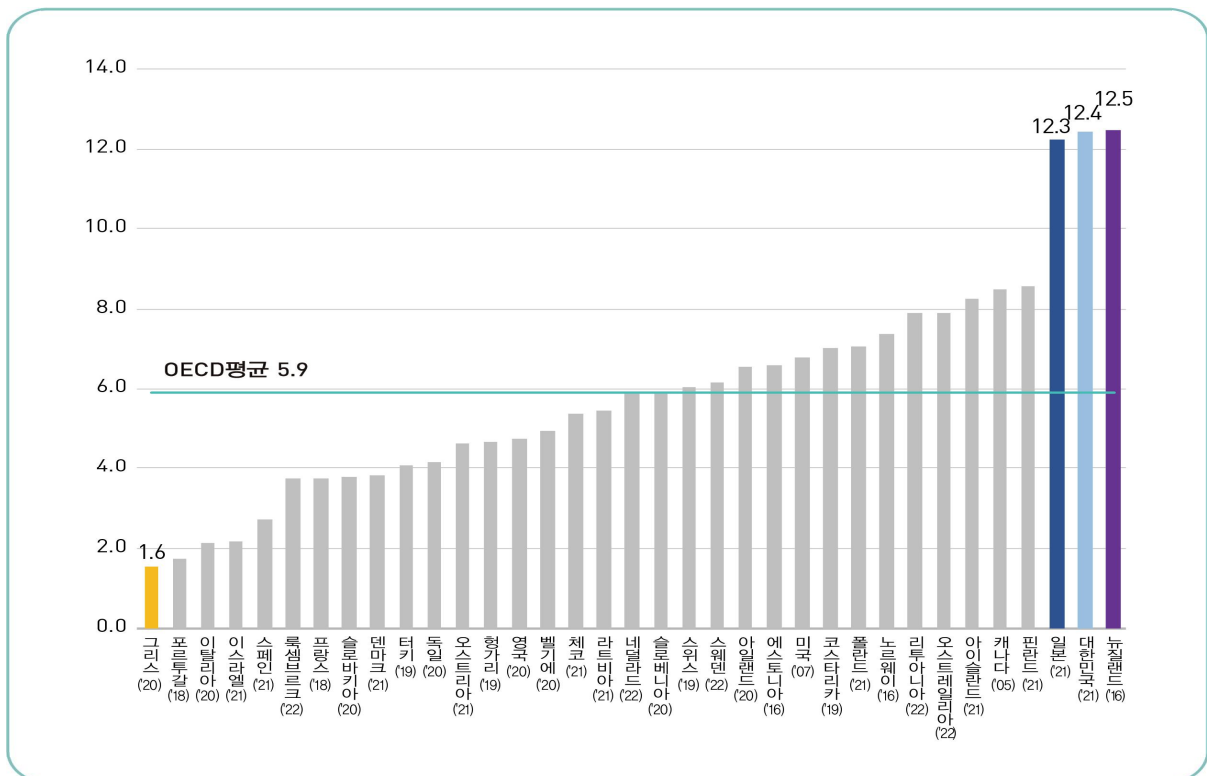
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.

-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4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,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(9~24세)의, 10만 명 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, 자살률은 10.8명이며, 10대 사망원인 1위가 ‘고의적 자해 또는 자살’로 나타난 바 있으며,

또한, 최근 연도 기준 OECD 회원국 청소년(10~24세) 자살률 평균은 5.9명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12.4명('21년)으로, OECD 평균보다 2.1배 높은 실정임.

<OECD 회원국 청소년(10~24세) 자살률 현황>

[단위: 인구 10만 명당 명]



* 출처: 보건복지부

□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은 밀접한 관련⁴⁾이 있어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,

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통합은 자칫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도치 않은 편견을 불러일으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 내용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.

□ 한편,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개별 면담, 강의,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, 이미 시행령에서 교육의 방법으로는 집합교육·시청각교육·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을, 상담의 방법으로는 전화상담·인터넷을 이용한 상담·개별 면담을 열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⁵⁾을 고려하면 교육현장의 신축적 운영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 또는 시행령 위임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4) 자살예방 교육은 정신건강의 인식 훈련과 스트레스 대응 등 기술 훈련을 포함하므로 정신건강증진 관련 내용과 무관하지 않음.

5)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」

제10조의2(자살예방 상담·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1. 자살예방 교육: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. 다만,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·단체·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·단체·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2. 자살예방 상담: 전화상담,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

<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>

부처명	개정안에 대한 의견
보건복지부	○자살예방과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, 정신건강질환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편견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. 한편, 상담과 교육의 구체적 방법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는 직접적 연관은 없으므로 현행처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함.
교육부	○기존 자살예방교육을 확장하여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정서교육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*,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증진교육의 통합 실시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됨. *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('24.8.9.)

문 의 처

02)6788-5498